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99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염태영 · 정준호 · 허영
전현희 · 권향엽 · 이해식
박지원 · 이개호 · 민홍철
최혁진 · 손명수 · 김문수
박홍배 · 김 윤 · 박용갑
이수진 · 이주희 · 고민정
박지혜 · 채현일 · 김승원
황명선 · 이광희 의원
(23인)

제안이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다.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를 둠(안 제19조).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걷기여행길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으로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의 보전 및 기후변화의 대응, 역사·문화 유산의 활용 및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 사회 복지 증진 등 건강·환경·문화·경제·복지의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여행”이란 걷기를 주된 활동으로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걷기여행길”이란 자연·역사·문화·생활공간을 연결하여 걷기 여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길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관리운영전담기관”이란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운영을 전담으로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걷기여행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반영하여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고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이용자 등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걷기여행길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으로 인하여 걷기여행길과 역사·문화·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걷기여행길의 점용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공공접근권) ① 모든 국민은 걷기여행길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관리기관은 사유지에 속하는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협약·보상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걷기여행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여행길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걷기여행의 현황 및 전망

3. 걷기여행길의 평가,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4. 걷기여행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① 행
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걷기여행길의 편의시설, 탐방안내시스템 등 기반 조성

2. 걷기여행길의 조사·홍보·이용 활성화

3.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

4. 걷기여행길 관련 인력양성과 민관협력

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

제10조(조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것

2.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및 자연생태적 가치를 살릴 것
3. 기존의 옛길,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4. 주변경관을 해치는 인위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본연의 환경을 유지할 것
5.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것

제11조(걷기여행길의 지정) ① 국가는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걷기여행길: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걷기여행길
2. 광역걷기여행길: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어 관리 및 이용촉진이 필요한 걷기여행길
3. 지역걷기여행길: 하나의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하나의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관리 및 이용촉진이 필요한 걷기여행길

② 걷기여행길의 구분,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 관리)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걷기여행길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 관리) ①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 구성에 있어 주변경관의 조화를 고려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 인증제도) ①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

제15조(이용 활성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축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설·교육, 국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

제19조(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①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3.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통합 기준
4.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5.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6.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
7.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활성화 및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20조(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정책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걷기여행길 주요 정책의 집행, 걷기여행길의 통합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걷기여행길 조사·연구 사업
3. 걷기여행길 인증제,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국제교류 및 국내외 홍보, 브랜드 개발
5. 걷기여행길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6. 전문 인력 양성 사업
7. 지자체·민간단체 지원
8. 정책협의체에서 심의·조정한 사업
9. 그 밖에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① 통합지원센터는 걷기여행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의 노선·지도·난이도·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걷기여행길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관리운영전담기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걷기여행길 조사
2. 걷기여행길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상시 관리 및 유지·보수
3. 걷기여행길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걷기여행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운영 중인 걷기여행길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